관리번호	-

(　　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(단일소득-종교인소득자용)
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		
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		
거주지국		거주지국코드	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
⑤ 납세지	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
⑥ 주소지 전화번호		⑦ 휴대전화번호	
⑧ 신고구분	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후신고		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⑨ 금융기관명		⑩ 계좌번호

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구 분		금 액
⑪ 과세표준: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㊼ 과세표준란의 금액		
⑫ 세 율: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		
⑬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⑪)×세율(⑫)－누진공제액(⑫하단 세율표 참고)]		
⑭ 세액공제: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㊿×10%		
⑮ 결정세액: ⑬－⑭		
⑯ 가산세액: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무(과소)신고	
	납 부 지 연	
	합 계	
⑰ 총결정세액: ⑮ + ⑯(합계란 금액)		
⑱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㊻×10%		
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⑰-⑱		

※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귀속년도 / 과세표준	2018년~2020년 세율	2018년~2020년 누진공제액	귀속년도 / 과세표준	2021년~2022년 세율	2021년~2022년 누진공제액	귀속년도 / 과세표준	2023년부터 세율	2023년부터 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

신고인은 **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**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**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**

년　　월　　일　　신고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접 수 증(　　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)

신고인 (대리인)	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			접수번호
		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